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 설명서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주의]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 핵심(요약)설명서

- 이 핵심(요약)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특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에만 투자가능한 계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 이상 인출없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
주식거래 가능여부	불가	가능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등]

□ 발생 가능한 불이익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국민성장펀드)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국민성장펀드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환매포함)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무자)가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전용저축 가입일(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본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가입 부적격 확인 시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지 시점에 국민성장펀드 증권등은 양도·환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특례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이 경우 양도·환매액은 해지 시점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운용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투자원금 전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위험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유동성위험	중도매도(환매불가)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매도(환매)가능 [O]
-------	----------------	--------------------	------------------

□ 유의사항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 각 증권사별 1인당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납입한도는 전 저축취급기관 등에 가입한 전용계좌 납입한도의 합계액 기준 2억원(연간한도 1억원)으로 제한되오니 한도 설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저축 가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전용저축계좌 내에서는 신용거래, 담보거래 등이 제한되며, 국민성장펀드 외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 ISA 등 다른 세제혜택 계좌에서도 국민성장펀드 투자가 가능하나, 본 전용저축의 과세특례(분리과세,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계좌의 세제혜택만 적용됩니다.
- 이 상품은 투자세제지원을 위한 한시적 상품으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또는 제도개정 등에 따라 요건 및 투자가능상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전용저축계좌에서는 '26년도에 설정된 펀드와 '27년도 이후 신규 설정 펀드를 모두 투자할 수 없으며, 신규 설정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저축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전용저축계좌는 판매사 이동(이관)이 불가능합니다.

[민원, 상담 연락처]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 (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고객센터/FAQ>고객의 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 설명서

1. 국민성장펀드 전용저축계좌 개요 및 특성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장펀드 전용저축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에 따라, 가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 집합투자기구(국민성장펀드)의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9.9%) 및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계좌입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개인 고객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 가입은 불가합니다. • 아래 가입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전용계좌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p>납입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며, 모든 저축취급기관 등에 가입한 전용계좌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 납입한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리되며, 여러 판매사·여러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전 저축취급기관 합산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1인당 연간한도 1억원) • 납입한도 =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인출한 납입원금의 누계액 • 전용계좌 내에서 일부 금액 인출 시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보아,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됩니다. 단, 전용계좌 내 보유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매도하더라도 매도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 납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며, 가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p>입출금 /투자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한도 이내에서는 전용계좌 내 입출금 제한이 없습니다. • 전용계좌 내에서 일부 금액 인출 시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보며, 인출된 금액만큼 납입금액에서 차감되어 납입한도가 새로 생성됩니다. •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 재투자 금액, 예탁금 이용료 등은 납입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30.12.31. 이전에 전용계좌를 해지하였더라도 동일 기한까지 재가입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된 전용저축의 납입한도는 인출한 납입원금의 누계액에 포함되어 납입한도가 추가 생성됩니다.
<p>가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가입금액) 100만원 • (최고 가입금액) 1인당 연간 1억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

2. 국민성장펀드 전용저축계좌 상품 설명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 가능한 자산은 국민성장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으로 관리되는 종목에 한정됩니다. • 전용계좌 내에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고 남은 금액은 예탁금 또는 현금 형태로 보관 가능하며, 타 금융 상품 가입·투자는 불가합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유가증권시장(KOSPI)의 '환매금지형 펀드 수익증권'으로 상장되며, 폐쇄형 펀드로 모집 청약 후 일괄 상장됩니다. • 하나의 전용계좌에서는 '26년도에 설정된 펀드(1호)와 '27년도 이후 신규 설정 펀드(2호) 모두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26년도에 설정된 펀드를 투자한 전용계좌에서는 '27년도에 신규 설정 펀드 투자는 투자할 수 없으며, 신규 전용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p>(동일 회차의 국민성장펀드 추가 매수를 위해서도 전용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야 합니다)</p>
매수/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장펀드는 폐쇄형 펀드로 모집 청약 후 KOSPI에 '환매금지형 펀드 수익증권'으로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 타인 소유의 국민성장펀드 증권등을 양수(상장시장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나 소득공제는 미적용됩니다. • 전용계좌의 판매사 이동(이관)은 세제혜택 계좌의 특성상 불가합니다. • 펀드 양도(매도) 시 배당소득세 과세 적용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동일 전용계좌 내 동일 펀드의 신주+구주 투자 후 매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특별해지 사유)로 국민성장펀드를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환매 시 추징 없이 가능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국민성장펀드 양도·환매 전 6개월 이내 발생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허가의 취소·해산 결의·파산선고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장펀드 매수·매도 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일반위탁계좌의 수수료율 및 펀드별 보수수수료 안내에 따르오니 각 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9%로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 분리과세 혜택은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혜택 적용 대상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한정됩니다. • 분리과세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46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 귀속시기인 지급일 또는 재투자에 따
------	---

	른 원본전입일 입니다.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국민성장펀드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필요합니다. • 타인 소유의 국민성장펀드 증권등을 양수(상장시장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미적용됩니다. •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매년 별도로 적용됩니다. (단, 전체 납입원금 기준 2억원 한도 내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소득공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전면 비과세(농특법 §4)

[소득공제 공제율 차등 적용]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원) 적용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 여부]

국민성장펀드 보유기간	자금인출 방식	세제혜택 여부	재가입/한도복원
3년 이상 (요건 충족)	중도인출(일부매도)	○	가능
3년 이상 (요건 충족)	계좌해지(전부매도)	○	가능
3년 미만 (요건 미충족)	중도인출(일부매도)	X	가능
3년 미만 (요건 미충족)	계좌해지(전부매도)	X	가능

[감면세액 추정]

• 국민성장펀드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펀드 증권등을 양도·환매하는 경우(특별해지 사유 제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정합니다.

- (분리과세)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
 - (소득공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양도액 또는 환매액 × 14% 금액을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 (단,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함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추징)
-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펀드 만기 도래로 상환되는 경우라도 의무보유기간(3년 이상)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적격 여부의 확인 및 부적격 통보 시 처리]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가입시점에는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가장 최근 과세를 제외한 2개 과세기간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 과세기간의 대상자 여부는 매년 9월경 확인됩니다. (예: 2026년 가입시, 2023년, 2024년 해당여부는 가입 즉시 확인 가능하나 2025년 해당여부는 2026년 9월경 확인 가능)
-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국세청에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국세청은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합니다.
- 부적격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14일 이내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부적격 통보일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국민성장펀드는 양도환매된 것으로 간주(해지 시점 기준가격 적용)하여 과세특례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부적격 확인된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로 전환하여 국민성장펀드 보유(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확인 서류]

-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직전년도 기준, 직전년도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인정)
- (19세 이상 거주자) 19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 증표
-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 미성년자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직전년도 기준에 한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로 확인

4. 통지

통지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성립 결과 통지 및 권리 통지 등은 주식거래 통지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 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수시통지)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잔량을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p>고객께서 통지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 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p>
------	---

	지 아니하거나, 통지 내용이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 고객센터(1544-5000)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5. 기타 유의사항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금융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국민성장펀드)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계좌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와의 위탁매매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합니다.
-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됩니다.
- 이 상품은 투자세제지원을 위한 한시적 상품으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또는 제도개정 등에 따라 요건 및 투자가능 상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 전용저축은 세제혜택 계좌이므로 판매사 이동(이관)이 불가합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가입하시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6.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행사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접,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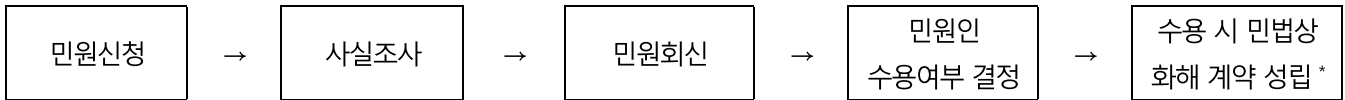
행사요건	고객은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 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금융상품	고객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가능기간 및	고객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

요구방법	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 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8. 청약철회권

○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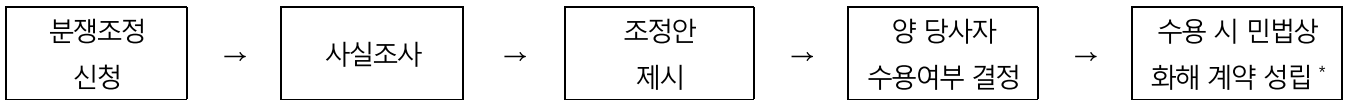
9.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
전자 민원접수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
영업점 민원창구	서면(민원신청서)	-
본사 민원담당부서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 FAX(02-3276-4332)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10.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연락처	바로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197/sub040104.do)
한국거래소	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판매직원 확인사항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_____ 지점 (☎ _____) 직위: _____ 직원명: _____ (서명)
----------------------	---